

의안번호	제38호
의결 연월일	2002년 월 일 (제206회)

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견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02년 월 일

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의견

의안
번호

38

제출연월일 : 2002년 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우리 도 체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레슬링, 역도 등 8개 투기종목 전용훈련장 확보 및 2004년 전국체전시 대회운영본부와 프레스 센터로 활용할 「충북다목적체육관」을 건립코자
- 지난 3월 제198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며 으나, 충청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실시설계결과 건축연면적과 사업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고
- 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능력 제고를 위한 헬기구입 사유가 발생하여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 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결을 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□ 재산의 취득

<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 변경 >

- 위 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808-6번지 일원
- 사업기간 : 2002. 3월 ~ 2004. 7월
- 용 도 : 체육시설
- 사업변경내역
 - 연 면 적 : (당초)9,256㎡ 지하2,지상5 (변경) 11,125㎡ 지하2, 지상8
 - 총사업비 : (당초) 103억원 (변경) 120억원
 - 도 비 : (당초) 63억원 (변경) 50억원

< 소방헬기 구입 >

- 구입수량 : 1대
- 구입시기 : 2003년
- 용 도 : 인명구조, 화재·산불진압, 항공방재 등
- 사 업 비 : 70억원(국비 35억원, 도비 35억원)

3. 예산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재산취득	재산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	비 고
계	19,000,000				
충북 다목적체육관 건립 변경	12,000,000 국 비 : 3,000,000 교부세 : 4,000,000 도 비 : 5,000,000				
소방헬기 구입	7,000,000 국 비 : 3,500,000 도 비 : 3,500,000				

4.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 첨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제78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(7-2)

(단위 :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추정가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				
계	토지						
	건물	1 건(규모,금액 변경)	11,125㎡ (3,365평)	12,000,000 (5,000,000)			
	기타	1 건	1 대	7,000,000 (3,500,000)			
1	토지						
	건물 (1건)	충주시 칠덕구 사격동 808-6	11,125㎡ (3,365평)	12,000,000 (5,000,000)	2002. 3 - 2004. 7	다목적체육관 건립	신 축
	기타						
2	토지						
	건물						
	기타	1 건(소방헬기)	1대	7,000,000 (3,500,000)	2003	인명구조 화재전압	미 정
3	토지						
	건물						
	타						

* 추정가액내 ()는 도비 예산액

관 계 법 령 발 취

【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】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
<p>제78조(공유재산심의회)①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</p> <p>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 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. 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)

【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】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하기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 2 ~ 5호 생략